

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06 - 40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

발 의 자 이수정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- 거창군의회위원의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관심분야의 연구단체 및 지원에 따른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시하여 왔으나 의회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명 “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”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
-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함(안 제3조)

3. 개정규칙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”을 “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”으로 한다.

제3조(연구단체지원 심의) 중 “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친다.”를 “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</u></p> <p>제3조(연구단체지원 심의)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<u>의회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</u>의 심의를 거친다.</p>	<p><u>거창군 의회의원 연구단체지원 규칙</u></p> <p>제3조(연구단체지원 심의) ----- ----- <u>각 상임</u> <u>위원회</u> ----- -----</p>